

		시 민			
문서번호	재난관리과-1523	담당자	구조팀장	재난관리과장	소방서장
결재일자	2020.3.10.	권우성	이종태	이철호	03/10 권오덕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
방침번호					

I. SEOUL.U
나와 너의 서울

2020년 구로·금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



2020. 3.

구로소방서
(재난관리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 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구로구청, 금천구청 등
홍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 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검토완료

2020년 구로·금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

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'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

I 관련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(긴급대응협력관)

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1.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
2.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

-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소방청 고시 제2019-43호)

II 운영개요

-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(※ 긴급구조기관: 구로소방서)
 - [지정요청] 긴급구조기관의 장 →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
 - 요청방법: 사전에 문서(공문)로 요청
 - [지정통보]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
 - 지정대상: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, 부장 등 책임자
 - [변경통보]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
 -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

- 긴급대응협력관 회의: 연 2회(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)
- 긴급대응기관 협의회: 필요 시 연 1회 이상

[표] '긴급대응협력관 회의' 및 '긴급대응기관 협의회' 비교

구분	긴급대응협력관 회의	긴급대응기관 협의회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구조기관 - 긴급대응협력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구조기관 - 시장 / 구청장 -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
운영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2회 -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1회 이상 - 필요 시(간사가 소집 요구)

III 세부 운영계획

1 긴급대응협력관

- 긴급대응협력관 회의
 - [회의목적] 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
 - [운영횟수] 연 2회 실시(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)
 - 상반기: 5월 / 하반기: 10월 [※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]
 -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
 - [참여인원] 긴급구조기관,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
 - [회의내용]
 -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
 -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
 -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
 - [결과통보]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

□ 구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

구로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	
위원장	구로구청장

긴급구조기관의 장	
간사	구로소방서장

구로구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	소 속		직 책	
	1	위원	구로경찰서	서장
	2	위원	구로보건소	소장
	3	위원	강서수도사업소	소장
	4	위원	강서도로사업소	소장
	5	위원	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	서부봉사관장
	6	위원	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	배전운영부장(구로금천지사)
	7	위원	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	사장
	8	위원	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	사장
	9	위원	귀뚜라미에너지	안전기술부문장
	10	위원	KT구로지사	사장
	11	위원	고대구로병원	병원장
	12	위원	구로성심병원	병원장
	13	위원	희명병원	병원장
	14	위원	육군7668부대	대장

□ 금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

금천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	
위원장	금천구청장

긴급구조기관의 장	
간사	구로소방서장

금천구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	소 속		직 책	
	1	위원	금천경찰서	서장
	2	위원	금천보건소	소장
	3	위원	남부수도사업소	소장
	4	위원	남부도로사업소	소장
	5	위원	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	서부봉사관장
	6	위원	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	배전운영부장(구로금천지사)
	7	위원	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	사장
	8	위원	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	사장
	9	위원	귀뚜라미에너지	안전기술부문장
	10	위원	KT구로지사	사장
	11	위원	고대구로병원	병원장
	12	위원	구로성심병원	병원장
	13	위원	희명병원	병원장
	14	위원	육군7668부대	대장

IV 행정사항

-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긴급구조기관(구로소방서)에 통보해 주시고,
- 재난발생·대응단계 발령 시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(2019년 12월 기준) 1부. 끝.

재난안전법

제52조의2(긴급대응협력관)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**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**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지정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**

1.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
2.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

[본조신설 2016. 1. 7.]

시행령

제61조의2(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·운영)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(이하 "긴급대응협력관"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 [본조신설 2017. 1. 6.]

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2조(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)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**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,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.**

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3조(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)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
2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
3.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·장비 정보 공유 방안
4.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
6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

제4조(운영계획 수립)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**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**하되, 재난대비 **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**

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긴급구조교육)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) ① **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**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**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** 다만, 1개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8조(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)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, 기관간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.

재난안전법 시행령

제61조(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)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**실무책임자**로 한다. <개정 2015.6.30.>
 [전문개정 2010.12.7.]

[별표]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

구 분	내 용
명 칭	○○시·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○○시·군·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
구 성	긴급구조기관의 장,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) * 위원장: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: 긴급구조기관의 장
운영횟수	연 1회 이상(필요 시 간사가 소집 요구)
회의내용	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